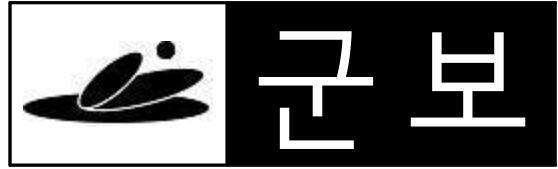


예 산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제688호 2023. 1. 30.(월)

고 시

- 예산군 고시 제2023-18호 :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(내포신도시 RH13BL) 2
- 예산군 고시 제2023-21호 : 예산군관리계획(원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

입법예고

- 예산군 공고 제2023-140호 : 『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예산군 고시 제 2023-18호

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

주식회사 동원종합개발 대표 허성국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H13BL(삽교읍 목리 888번지)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「주택법」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19일

예 산 군 수

1. 사 업 명 : 내포신도시 RH13BL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시행자
 - 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: 주식회사 동원종합개발 대표 허성국
 - 나. 주 소 :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(명곡동)
3. 사업위치 :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H13BL (목리 888번지)
4. 사업개요

사업종류	사업계획승인	총사업비
주택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지면적 : 35,290m² ○ 연 면 적 : 125,146.1947m² ○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○ 공급방법 : 민간분양 ○ 사업규모 : 주9동(지하2층,17~24층)/ 696세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4A형 (전용 84.9976m²) : 368세대 - 84B형 (전용 84.9992m²) : 269세대 - 84C형 (전용 84.9962m²) : 59세대 	265,846,171천원

5. 사업기간 : 2023.05.31. ~ 2026.05.31. (예정)
6. 사업승인 : 2023.01.19. (2023-도시건축과-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-1)
7.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: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

예산군 고시 제2023-21호**예산군관리계획(원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
지형도면 고시**

1.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894-12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(원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건축과(041-339-7704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·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

2023. 1. 26.

예 산 군 수

가. 예산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별항

나. 예산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지형도면 고시도 : 게재생략

- 예산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(1/5,000)
- 지형도면 고시도(1/1,200)
-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도(1/1,200)
- 토지이용계획 결정도(1/1,200)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1/1,200)
-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1/1,200)

다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건축과(041-339-7704)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■ 예산군관리계획(원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적(m ²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31,800	-	31,800	100.0	
관리 지역	보전관리지역	-	-	-	
	생산관리지역	-	-	-	
	계획관리지역	15,930	증) 15,870	31,800	100.0
농림지역	15,870	감) 15,870	-	-	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m ²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894-12	농림 지역	계획관리 지역	15,870	100.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운영 중인 공장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㉗	원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산업 유통형	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894-12	-	증) 31,800	31,800	-	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㉗	원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면적 : 31,800m²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장부지 증설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2.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토지이용계획

1)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-	증) 31,800	31,800	100.0	-
공 업 용 지	-	증) 26,598	26,598	83.7	공장 및 부대시설용지
녹 지 용 지	-	증) 4,647	4,647	14.6	-
공공시설용지 (하천용지)	-	증) 555	555	1.7	소하천구역

2)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사유서

구 분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공 업 용 지	▪ 면적(신설) - 공장용지 : 26,598㎡	▪ 공장부지 증설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
녹 지 용 지	▪ 면적(신설) - 녹지용지 : 4,647㎡	▪ 공장부지 증설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공업용지 주변으로 완충용 녹지용지 계획
공공시설용지 (하천용지)	▪ 면적(신설) - 하천용지 : 555㎡	▪ 소하천 구역 결정(변경) 고시로 인해 원천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용지(하천용지)로 계획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	비 고	
			위 치	면적(㎡)				
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31,800	5획지	-	증) 31,800	31,800	-	
-	1BL	31,800	1-1	오가면 원천리 894-12	-	증) 26,598	26,598	공업용지
			1-2	오가면 원천리 894-1	-	증) 3,711	3,711	녹지용지
			1-3	오가면 원천리 844-3	-	증) 646	646	녹지용지
			1-4	오가면 원천리 894-12	-	증) 290	290	녹지용지
			1-5	오가면 원천리 894-12	-	증) 555	555	하천용지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사유서

가구 번호	획지 번호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1BL	1-1	▪ 면적(신설) - 1-1획지(공업용지) : 26,598m ²	▪ 공장부지 증설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
	1-2	▪ 면적(신설) - 1-2획지(녹지용지) : 3,711m ²	▪ 공장부지 증설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공업용지 주변으로 완충용 녹지용지 계획
	1-3	▪ 면적(신설) - 1-3획지(녹지용지) : 646m ²	▪ 공장부지 증설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공업용지 주변으로 완충용 녹지용지 계획
	1-4	▪ 면적(신설) - 녹지용지 : 290m ²	▪ 공장부지 증설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공업용지 주변으로 완충용 녹지용지 계획
	1-5	▪ 면적(신설) - 하천용지 : 555m ²	▪ 소하천 구역 결정(변경) 고시로 인해 원천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용지(하천용지)로 계획

다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	
-	1-1	용도	허용 용도	▷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(단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·2종사업장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제외)		
				중분류	소분류	업 종
				10	101	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
					107	기타 식품 제조업
			불허 용도	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
			건폐율	▷ 60%이하		
			용적률	▷ 150%이하		
	높이	▷ 5층(20m 이하) 단, 기 운영중인 공장동에 한해서는 30m까지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한다.				
-	1-2	용도	허용 용도	▷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녹지 및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·공작물(단, 녹화면적률은 80% 이상으로 함)		
			불허 용도	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
	1-3	건폐율	-			
	1-4	용적률	-			
		높이	-			

예산군 공고 제2023-140호

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1월 26일

예 산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인구감소지역 지정, 초고령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군의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정책의 수혜 범위 확대
- 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청년의 군정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조정(안 제2조제1호)

- 변경 전: 18세 이상 39세 이하
- 변경 후: 18세 이상 45세 이하

나. 청년의 기준 명확화(안 제2조제1호)

- 변경 전: 예산군에 거주·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
- 변경 후: 예산군에 거주·생활하는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. 26. ~ 2. 15.(21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(인구정책대응팀 ☎ 041-339-7238, FAX : 041-339-720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할 곳

- 우편발송 : (우편번호 32435)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,
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
- 전자메일 : shj1218@korea.kr
- 기타 문의 관련 : ☎(041)339-7238, fax : (041)339-7209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 1]**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**

조례명 : 「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[붙임 2]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

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거주·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”을 “(이하“군”이라한다)에 거주·생활하는”으로, “39세”를 “45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<u>예산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거주·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</u>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(<u>이하“군”이라 한다</u>)에 <u>거주·생활하는 -----</u> ----- <u>45세</u>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